

사업장 보관용

보존기간	2023년 01월 20일 부터
(5년)	2028년 01월 19일 까지



202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

SM상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7공구



DODBOM E&C
주식회사 **돌봄이앤씨**

기관 보관용

보존기간	2023년 01월 20일 부터 (5년)	2028년 01월 19일 까지
------	----------------------------	------------------



202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표

SM삼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7
공구

특별관리 대상물질	허가 대상물질	허용기준 대상물질	소음제외	소음	측정주기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보유 <input type="checkbox"/> 초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보유	<input type="checkbox"/> 초 과 <input type="checkbox"/> 1/2초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 만	<input type="checkbox"/> 초 과 <input type="checkbox"/> 85이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 만	<input type="checkbox"/> 3개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년

결 재	담당	분석	본부장	대표이사



DODBOM E&C
주식회사 **돋봄이앤씨**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2022년도 상 하 반기)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SM삼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 간 건설공사 제7공구	대표자	송동근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북면 영덕리 635		
전화번호	041-566-3823	팩스번호	041-566-3824
근로자수	38명	업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주요생산품	도로, 터널		

2. 측정기관명 : 주식회사 돌봄이앤씨

3. 측정일 : 2022년 12월 23일 ~ 2022년 12월 23일 (01 일간)

4. 측정 결과

유인	해자	측정 공정수	측정 최고치	노출기준 초과공정(부서)수			개선내용
				계	개선완료	개선중 미개선	
소음		2	68.1dB(A)				
기타광물성분진		2	0.8658mg/m ³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2	0.00680mg/m ³				

5. 측정주기 (해당항목 ○표 및 관련항목 기재)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신규 가동 또는 변경 여부	없음	
최근 2회 모든공정 측정결과	2회연속미만	
화학물질 측정결과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없음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없음
향후 측정주기	6개월	
향후 측정 예상일	2023년 06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사업주 송동근 (서명 또는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2. 노출기준 초과부서는 개선 완료 또는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미개선인 경우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2022 년도 상 하 반기)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SM상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7공구	대표자	송동근
소재지	3123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면 명덕리 635		
전화번호	041-566-3823	팩스번호	041-566-3824
근로자수	38 명	업종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주요생산물	도로, 터널		

2. 작업환경측정 일시

가. 측정기간 2022년 12월 23일 ~ 2022년 12월 23일 (01 일간)

나. 측정시간 08 : 00 ~ 15 : 20 (06시간 20분)

3. 작업환경측정자 (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황다흰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142021021221	
장한아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082011330110	분석사 —

4. 지정 한계 및 측정 실적

측정기관명	지정한계	측정 실시 사업장 일련번호(반기 기준) (총 누적 / 5명 이상 누적)
주식회사 돌봄이앤씨	240 개소	(69 / 66)

5.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불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2023년 01월 20일

측정자(측정기관의 장) 주식회사 돌봄이앤씨
(사업주) 송동근 귀하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종합의견

1. 예비조사 결과

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SM삼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7공구 현장은 교량, 터널 및 도로를 건설하는 건설업종으로 작업환경측정 시 전 회 측정자료, 작업공정률 및 MSDS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측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비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공정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분포 및 공정을 진행에 따른 작업진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 정 명]	북면1터널시점	-	38+590통로암거
	(천공/발파)		(목수)

[작업상황]	작업중	작업중
--------	-----	-----

[유해인자]	소음, 분진	소음, 분진
--------	--------	--------

=====

◆ 근무형태

근무시간 : 07:00 ~ 16:00

점심시간 : 11:30 ~ 13:00 (1시간)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은 각 공정별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공정별 유해인자의 분포는 사업장에서 제공된 화학물질 사용실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단시간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9호)과 임시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8호), 그리고 허용소비량 미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1조)을 적용하여 해당 부서 및 대상물질은 측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각 공정별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대상 작업자는 측정 일의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 회 작업환경측정에서 임시, 단시간 작업 및 화학물질의 허용소비량 미만 사용으로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측정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향 후 현장 작업공정의 변경/추가, 취급물질의 변경/추가, 설비의 증설/추가/변경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발생 실태

○ 공장명 : 본사

공정명	유해위험인자	발생실태
천공/발파	소음	천공, 발파 작업 시 불규칙적으로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석영)가 발생됨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목수	소음	목공 작업 시 불규칙적으로 소음,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석영)가 발생됨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나.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정별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

○ 작업환경측정에 걸리는 기간 : 2022년 12월 23일 ~ 2022년 12월 23일 (01일간)

○ 공장명 : 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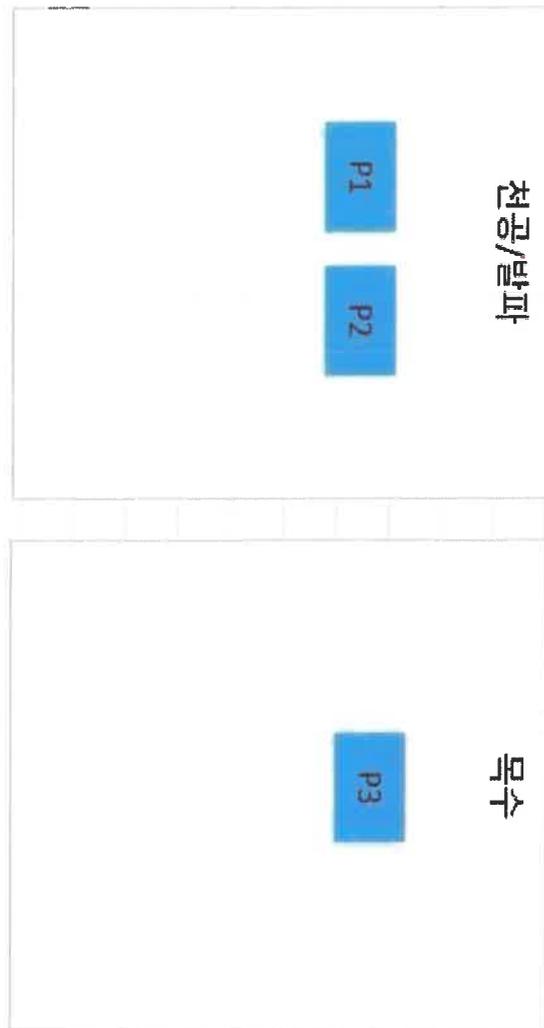
측정대상 공정	측정대상 유해인자	유해인자 발생주기	근로 자수	작업시간 (폭로시간)	측정방법 (개인/지역)	예상시료채취건수 또는 측정건수
천공/발파	소음	불규칙	2	8시간 (8시간)	도시소음계 (개인)	2
	기타광물성분진			8시간 (8시간)	여과채취법 (개인)	2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8시간 (8시간)	FTIR법 (개인)	2
목수	소음	불규칙	1	8시간 (8시간)	도시소음계 (개인)	1
	기타광물성분진			8시간 (8시간)	여과채취법 (개인)	1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8시간 (8시간)	FTIR법 (개인)	1

다.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 상태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	제조또는 사용여부	사용용도	월 취급량 (m ³ .톤)	비 고
	해당사항 없음				

2. 작업환경측정개요

가.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 측정대상 부서의 평면도와 단위작업장소별 측정위치를 표시

나-1.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제외) : SM상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7공구

○ 공장명 : 본사 ○ 작업장기온: -10℃ ~ -5℃ ○ 작업장습도: 40% ~ 50% ○ 전회측정일: 2022.05.13 - 2022.05.13

부서 또는 공정명	단 위 작업장소	유해인자	근로 자수	근로형태 및 실제근로시간	유해인자 발생시간 (주기)	측정위치 (근로자명)	측정시간 (시작 ~ 종료)	측정 횟수	측정치	시간가중평균치(TWA)		노 출 기 준	측정농도 평가결과 방법	비고
										전 회	금 회			
천공/발파	북면1터널시 점	기타광물성분진	2	1조1교대 480분	480분	P1 (이운학)	08:12 ~15:12	1	0.3550	전회치없음	0.3550	10mg/m³	미만	1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1	0.00532	전회치없음	0.00532	0.05mg/m³	미만	20
	기타광물성분진					P2 (정진영)	08:11 ~15:11	1	0.3679	전회치없음	0.3679	10mg/m³	미만	1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08:11 ~15:11	1	0.00680	전회치없음	0.00680	0.05mg/m³	미만	20
목수	38+590통로암 거	기타광물성분진	1	1조1교대 480분	480분	P3 (임준학)	08:11 ~15:11	1	0.8658	0.1163	0.8658	10mg/m³	미만	1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08:11 ~15:11	1	0.00403	불검출	0.00403	0.05mg/m³	미만

※ 측정방법

1) 여과채취법/중량분석법(분진) 20) FTIR법/FTIR법

나-2. 단위작업 장소별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 : SM상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7공구

○ 공장명 : 본사

단위 : dB(A)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주요발생원인)	근로자수	작업내용	근로형태 및 실제근로시간	발생형태 및 발생시간 (주기)	측정위치 (근로자명)	측정시간 (시작 ~ 종료)	측정 횟수	측정치	시간가중평균치(TWA)		노 기 준	노 출 기준 초과여부	측정 방법	비고
										전 회	금 회				
천공/발파	북면1터널시정	2	천공, 발파작업	1조1교대 480분	불규칙소음 480분	P1 (이운학)	08:12 ~ 15:12	1	66.1	전회치없음	66.1	90	미만	21	
					불규칙소음 480분	P2 (정진영)	08:11 ~ 15:11	1	63.0	전회치없음	63.0	90	미만	21	
목수	38+590통로암거	1	목공	1조1교대 480분	불규칙소음 480분	P3 (임준학)	08:11 ~ 15:11	1	68.1	70.9	68.1	90	미만	21	

※ 측정방법
21) 도시소음계/소음노출량계 : dB(A)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1. 측정결과의 평가

[소음]

○ 공장명 : 본사

순번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	측정위치	측정치	노출기준	평가
1	천공/발파	북면1터널시점	P1 이운학	66.1 dB(A)	90	미만
2			P2 정진영	63.0 dB(A)	90	미만
3	목수	38+590통로암거	P3 임준학	68.1 dB(A)	90	미만

[단일물질]

○ 공장명 : : 본사

순번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	유해물질	측정위치	측정치	평가
1	천공/발파	북면1터널시점	기타광물성분진	P1 이운학	0.3550	미만
2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P1 이운학	0.00532	미만
3			기타광물성분진	P2 정진영	0.3679	미만
4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P2 정진영	0.00680	미만
5	목수	38+590통로암거	기타광물성분진	P3 임준학	0.8658	미만
6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P3 임준학	0.00403	미만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SM삼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7공구 현장의 2022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1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44호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다음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안전, 보건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은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해인자별 측정 결과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건관리 조치를 참고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한 부서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노출기준 이내인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유해인자의 노출저감 및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 측정 결과의 요약

소음, 분진류(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석영)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전체 측정항목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보건관리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대상부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건설 업종의 특성 상 금 회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은 잠재 되어 있는 유해인자 중심이 아니라 일정한 작업 기간 동안에 진행되는 특별한 작업단위에 대하여 측정이 진행되는 직무중심적 평가(task-based assessment)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다양한 노출 환경이 완전하게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에서 공정변경 및 사용물질 추가 등의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해인자의 최고노출수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인자	최고노출수준 (해당공정)	노출기준	평가	초과배수
소음	66.1 dB(A) (천공/발파)	90 dB(A)	미만	73.44 %
소음	68.1 dB(A) (목수)	90 dB(A)	미만	75.66 %
기타광물성분진	0.3679 mg/m ³ (천공/발파)	10 mg/m ³	미만	3.67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0.00680 mg/m ³ (천공/발파)	0.05 mg/m ³	미만	13.60 %
기타광물성분진	0.8658 mg/m ³ (목수)	10 mg/m ³	미만	8.65 %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0.00403 mg/m ³ (목수)	0.05 mg/m ³	미만	8.06 %

3-2-2. 작업환경관리 실태 및 문제점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전담 관리자의 선임 및 업무 수행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전보건관리 교육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고지 및 작업환경으로인한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작업자의 건강장해 유발과 예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노출 저감을 위하여 발생된 분진의 비산방지, 주기적인 작업장 청소관리 습식 장비 사용을 통한 분진 발생 제어 등 다양한 관리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 소음노출로 인한 작업자의 청력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과도한 소음이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방식에 대해 주지시키고 있으며, 소음의 전파 방지를 위한 작업구역의 차단, 소음 발생 지역의 출입 관리 등 다각적인 소음노출 관리대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산소결핍 등 밀폐공간 작업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산소농도 측정기를 구비하여 필요시 사용하고 있으며, 작업자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고표지 등을 부착하여 근로자의 근원적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장 작업자에게 업무 투입 전 안전보건교육(신규 채용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COVID-19 건강장해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호흡용 보호구, 청력보호구 등의 적정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COVID-19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발병 등의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의 체온을 체크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 비치, 적정 마스크의 착용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감염 예방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종의 특성상 작업공정이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산발적으로 진행되며, 공정률에 따라 작업 인원이 유동적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측정대상 유해인자와 측정대상 인원을 특정화하기 어렵습니다.
- 작업 규모가 크고 작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작업환경측정 현장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위험성이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작업환경 유해인자의 노출환경이 다양화 및 심층화 되어 있고, 많은 작업들이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다양한 유해인자 중에는 저농도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인체의 비 가역적 손상을 야기하는 물질들이 있으므로, 금 회의 작업환경측정에서 노출기준 이내로 평가되었거나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노출 위험성 관리에 유의하여 합니다.

3-2-3. 평가 결과의 분석

가. 분진류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석영))

- 금 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든 항목(분진류)이 노출기준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측정치가 노출기준 미만이라는 것은 작업자가 통상적인 작업시간 (8시간)동안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작업자에게서 건강상의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금 회 의 측정 결과는 작업 시간, 작업의 강도, 작업장 환경 조건(온열, 기압 등)과 같은 영향 인자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작업 환경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 위험성 평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측정 결과에 대한 노출 기준 초과 여부는 직업성 질병을 진단하고 판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노출기준 이내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로 작업자의 직업성 질병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나 반증 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금 회 의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작업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불 특정한 상황에 의하여 단 시간 동안 고농도의 유해한 수준에 노출 될 수 있는 잠재된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심각한 노출이 발생 될 경우에는 인체에 비 가역적인 장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취급과 사용 시에는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작업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소 음

- 전 공정 작업 과정에서 불규칙한 소음의 발생이 예상되어 측정한 결과는 65.1 ~ 85.5dB(A)로 전체 작업 공정이 노출 기준 90dB(A) 미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소음의 평가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이라는 것은 작업자가 통상적인 작업 시간(8시간) 동안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작업자에게서 청력 손실의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85dB(A)을 초과하는 상태에서는 그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불규칙한 작업이 수행되는 상황에서는 작업 조건의 변화에 따라 소음 수준이 변동되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의 발생 및 작업자의 노출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금 회 작업환경측정에서 소음 수준이 노출 기준 이내라고 평가된 부서라 할지라도 불특정의 예기치 못한 수시 업무가 발생할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 상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동공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과 같이 짧은 작업 시간 동안 강렬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 노출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출 기준 이하의 작업환경에서도 직업성 질병에 이환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동 공구나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에는 순간적, 또는 단시간 동안의 소음도가 115dB(A)을 넘을 수 있고 작업의 특성상 소음발생원에 근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청력에 미치는 유해. 위험성이 커지므로 작업자의 보건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노출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평가는 직업성 질병을 진단하고 판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노출 기준 이내의 작업환경이라는 이유로 직업성 질병 이환을 부정하거나 반증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2-4. 작업환경 관리 대책

가. 공학적 대책

- 1) 분진류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석영))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금 회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든 항목(분진류, 유기화합물 및 가스상 물질류, 중금속류)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노출 저감을 위한 공학적 개선 대책에 관한 의무적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이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장기간 동안 저농도로 노출된 작업자에게서도 건강 상의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토 사항들을 참고하여, 향 후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까지 현재와 같은 관리 수준을 잘 유지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422조~451조(439조, 440조)의 경우 특별관리물질만 해당)의 사항 중 아래의 공학적 대책으로 제시되는 각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실시 및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 공정의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 작업자가 분진작업 (갱 내 포함 실내 작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줄일 수 있도록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07조)
- 분진작업장의 분진 발산 면적이 넓어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전체환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 제608조)
- 분진 작업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별표 17에 제시된 제어풍속 이상을 유지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09조)
- 분진작업 장소에는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하고 분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1조)
- 분진작업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신규 설치하고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장치를 개조 또는 수리한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하며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청소,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2조)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공정에서는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3조 ①항)
- 분진 작업장의 바닥·벽 및 설비와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바닥 등에 대해서는 쌓인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공청소기나 물을 이용하여 분진이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 기준 제613조 ②항)
-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절한 공기가 유지되는지를 평가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9조의2①항)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밀폐 공간에 대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적정 상태 이하로 평가된 경우, 작업장을 환기 시키거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9조의2 ②항)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0조)

2) 소 음

금 회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전체 공정의 소음 수준이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노출 관리를 위한 공학적 개선 대책의 의무적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향 후 23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점까지 현 상태의 작업 상태가 유지되어 소음 수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 특정한 임시작업 및 작업량 증가로 소음 노출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소음 발생원의 관리나 발생 소음의 전파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513조 ~ 521조 (518조~521조의 경우는 진동에 해당)의 사항 중 공학적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아래의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파악한 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513조~521조(518조~521조의 경우는 진동에 해당)의 사항 중 공학적 대책으로 제시되는 아래의 각 조치 사항들에 대해 실시 및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 한 후, 해당 공정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 강렬한 소음이나 충격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하여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513조)
- 작업자가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진동 기계·기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521조)

나. 관리적 대책

1) 분진류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석영))

금 회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든 항목(분진류, 유기화합물 및 가스상 물질류, 중금속류)이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노출 저감을 위한 관리적 개선 대책에 관한 의무적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이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장기간 동안 저농도로 노출된 작업자에게서도 건강 상의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토 사항들을 참고하여, 향 후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까지 현재와 같은 관리 수준을 잘 유지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422조~451조 (439조, 440조는 특별관리물질에만 해당)의 사항 중 아래의 관리적 대책으로 제시되는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실시 및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 공정의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 작업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작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4조)
 -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 작업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 목욕시설 등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5조)
-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는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7조)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 공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19조 ②항)
 -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 ㉥비상연락체계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0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1조)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은 작업 전에 미리 파악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 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2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시간 동안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3조 ①항)
- 밀폐 공간 작업 감시인은 밀폐 공간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3조 ②항)
-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 하는 동안 작업장과 외부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3조 ③항)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밀폐공간 작업자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4조)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25조)

2) 소 음

금 회 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전체 공정의 소음 수준이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노출 관리를 위한 공학적 개선 대책의 의무적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점까지 현 상태의 작업 상태가 유지되어 소음 수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 특정한 임시작업 및 작업량 증가로 소음 노출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소음 발생원의 관리나 발생 소음의 전파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513조 ~ 521조 (518조~521조의 경우는 진동에 해당)의 사항 중 관리적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아래의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파악한 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513조~521조(518조~521조의 경우는 진동에 해당)의 사항 중 관리적 대책으로 제시되는 아래의 각 조치 사항들에 대해 실시 및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 한 후, 해당 공정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 강렬한 소음이나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514조)
 -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515조)
 -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 ㉡청력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 ㉢방지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 강렬한 소음이나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는 개인 전용의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516조)
- 작업자가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518조)
- 작업자가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 제519조)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안

- 작업자가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동 기계·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내에 비치해 두어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520조)

다. 개인위생적 대책

1) 분진류 (기타광물성분진, 산화규소(석영))

금 회이 작업환경측정 결과, 모든 항목(분진류, 유기화합물 및 가스상 물질류, 중금속류)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노출 저감을 위한 개인위생적 개선 대책에 관한 의무적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이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장기간 동안 저농도로 노출된 작업자에게서 건강 상의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는 바,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토사항들을 참고하여, 향후 진행되는 작업환경측정 실시 주기까지 현재와 같은 관리 수준을 잘 유지하기를 권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422조~451조 (439조, 440조는 특별관리물질에만 해당)의 사항 중에서 개인위생적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조치 사항들에 대해 실시 및 적용 가능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 공정의 안전보건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금연, 취식 금지 등의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447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를 위해 세면·목욕·세탁 및 건조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4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 23에 명시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는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유해인자가 발생되어 작업자의 노출이 예상되는 공정에 신규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 배치 전 특수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업무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 해당 공정에 배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 공기매개 감염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작업자는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을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601조 ②항)

2) 소 음

금 회이 작업환경측정 결과, 전체 공정의 소음 수준이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노출 관리를 위한 공학적 개선 대책의 의무적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23년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시점까지 현 상태의 작업 상태가 유지되어 소음 수준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불 특정한 임시작업 및 작업량 증가로 소음 노출 증가가 예상될 경우에는 소음 발생원의 관리나 발생 소음의 전파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소음 노출로 인한 건강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대책으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513조 ~ 521조 (518조~521조의 경우는 진동에 해당)의 사항 중 개인위생적 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는 아래의 조치 사항들에 대하여 해당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파악한 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 513조~521조(518조~521조의 경우는 진동에 해당)의 사항 중 개인위생적 대책으로 제시되는 아래의 각 조치 사항들에 대해 실시 및 적용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해당 공정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 강렬한 소음이나 충격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는 개인 전용의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516조)
- 작업자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경우 공동 사용으로 인한 질병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 제450조 ④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2조 별표 23에 따라 소음 노출 수준이 85dB(A) 이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소음이 발생되어 작업자의 노출이 예상되는 공정에 신규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업무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 해당 공정에 배치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3-2-5. 기타 작업환경관리 유의 사항

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6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의 통지를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법 제125조 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법 제125조 항에 의거하여 필요 시 설명회를 통해 작업자에게 측정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 사업장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
- ㉡ 사보에 게재하는 방법
- ㉢ 자체정례조회 시 집합교육에 의한 방법
- ㉣ 해당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나. 특수건강진단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동법 시행규칙 제201조, 제202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되며, 야간작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야간작업 (2종)]

-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다. CMR 유해성 물질 관리

CMR물질은 장기간 노출을 통하여 인체에 비 가역적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작업자의 노출 저감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해인자	발암성(C)	생식세포 변이원성(M)	생식독성(R)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1A	-	-

㉡ 발암성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 시킴)

- 1A :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1B :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 2 : 사람이나 동물에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1그룹으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 시킴)

- 1A : 사람에게 대한 역학조사 연구 결과 양성의 증거가 있는 물질
- 1B : 포유류의 생체 내(in vivo)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가 있고 사람의 생식세포 변이원성 시험에서 양성
- 2 : 포유류의 생체 내 체세포 변이원성과 기타 시험동물의 체세포 유전독성 및 변이원성이 있고 변이원성 물질과 화학적 구조 활성 관계를 가지는 경우

㉣ 생식독성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줌)

- 1A :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가 있는 물질
- 1B :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있는 물질
- 2 :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는 물질

라. 적절한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착용 지도

※ 방진마스크

분진 관련 작업 시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진마스크는 해당 등급에 맞게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방진마스크 등급

특급, 1급, 2급의 3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특급

- ㉠ 베일룸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의 발생 장소
- ㉡ 석면 취급장소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단, 안면부여과식 특급은 석면 등 발암성 물질 취급작업에 사용하지 않는다.

② 1급

- ㉠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 ㉡ 금속 흡과 같은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의 발생장소
- ㉢ 기계적으로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장소

③ 2급

- ㉠ 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의 발생장소

※ 방독마스크

방독마스크는 화학물질의 가스, 증기, 미스트가 발생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며, 밀폐공간(산소결핍)이나 유해물질의 공기중 농도가 높은 작업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독마스크는 정화통을 통하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원리이므로 일정 기간 사용 후 주기적인 확인을 통하여 교체하여야 하는 소모품으로, 해당 현장에서 취급하는 유해인자에 따라 적절한 정화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정화통의 표시(색 구분)

- ① 갈색 : 유기용제 등의 가스나 증기
- ② 회색 : 할로겐가스나증기, 황화수소 가스, 시안화수소 가스나 시안산 증기
- ③ 노랑색 : 아황산 가스나 증기
- ④ 녹색 : 암모니아 가스나 증기

유기방독마스크의 경우 주기적인 필터 교체와 사용 후 밀폐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구는 근로자 수 보다 여유롭게 구비하여 오염이나 파손 시 수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지급 현황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청력보호구

소음 관련 작업 시 작업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마개 종류 및 성능

① 귀마개

1종(EP-1형)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종(EP-2형)은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기에 대화가 필요한 작업에서 사용합니다.

② 귀덮개(EM형)

청력 보호구 구매시 NRR(평균 차음률)값이 표기 되어진 제품들이 있으며, NRR(평균차음률)에 따라 소음의 차감 정도가 다르므로 확인 후 구매하여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수준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가 다릅니다. 소음 수준이 85~115dB(A)일 때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각각 착용하고, 110~120dB(A) 초과 시에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 향 후 작업환경측정 실시

2023년도 상반기 측정은 전체 공정 및 해당 유해인자를 대상으로 2023년 06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 현장 작업공정의 변경/추가, 취급물질의 변경/추가, 설비 증설 될 경우 변경 또는 추가된 날로부터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 의견

3-2. 문제점 및 개선대책

30일 이내 해당 공정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함)

※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동봉이앤씨 작업환경측정팀(070-8893-15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 www.dodbom.co.kr 참조)

특수 건강진단 대상 안내

업체명 : SM삼환기업(주)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안성간 건설공사 제7공구

○ 공장명 : 본사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대상인원	유해인자	검진주기(개월)	비 고
천공/발파	북면1터널시점	2	기타광물성분진	24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24	
목수	38+590통로암거	1	기타광물성분진	24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24	

- ▶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은 유해부서 또는 유해업무(상기 대상 공정)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번째 실시 시기	두번째부터의 실시 시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마다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마다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마다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마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마다

- ▶ 특수건강진단 주기의 일시단축 (주기의 1/2)
 - ①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공정의 당해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 ②직업병유소견자가 신규로 발생한 유해부서의 동일 작업 근로자
 - ③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 위 유해인자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참고자료입니다. 임시작업 및 신규 취급 물질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 최종선정 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인원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바 검진 당시 최종인원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